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쌍방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이용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향수함에 있습니다.

2. 계약기간

- ① 센터와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자(센터)의 의무

-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②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합니다.
- ③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의합니다.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부담합니다.

※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2018.12.2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120분 이상	36,720	210분 이상	50,190
60분 이상	21,690	150분 이상	41,730	240분 이상	53,940
90분 이상	29,080	180분 이상	46,13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5,2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60분 이상	53,170

[표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